

회의록

회의명	2026년도 제1회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행정지원과
서면심의기간	2026. 1. 21. ~ 23. / 3일간
회의방법	서면심의
심의위원	· 위원장: 김호진 행정부지사(직무대리) · 위촉직위원: 권오인 변호사, 김병규 교수, 송선아 변호사
상정안건	- 2025.12.22. 정직 2개월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기록 일체」 정보공개청구 신청 건에 대하여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 검토결정
주요의견	○ 김호진 위원장: 기각 (의견 없음) ○ 권오인 위 원: 기각 (의견 없음) ○ 김병규 위 원: 기각 (의견 없음) ○ 송선아 위 원: 기각 (의견 없음)
결정사항	-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 중 징계의결요구서 및 첨부된 조사보고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및 수령증 등은 이미 공개했으며 - 그밖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 정보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및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 공개에 따른 청구인의 알권리 보호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익을 비교형량 했을 때, 공개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에 따라 비공개 결정이 타당함 (기각)
비고	[관련근거]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명	2026년도 제2회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행정지원과
서면심의기간	2026. 1. 27. ~ 2. 3 / 6일간
회의방법	서면심의
심의위원	· 위 원 장: 김호진 행정부지사(직무대리) · 당연직위원: 김종수 안전행정실장 · 위촉직위원: 권오인 변호사, 송선아 변호사, 이상윤 교수
상정안건	상 정 안 건 : 국무조정실 이첩민원 관련 민원조사내역 일체」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 이의신청 건 검토결정
주요의견	○ 김호진 위원장: 부분인용 (의견 없음) ○ 김종수 위 원: 부분인용 (의견 없음) ○ 권오인 위 원: 부분인용 (의견 없음) ○ 송선아 위 원: 부분인용 (의견 없음) ○ 김병규 위 원: 부분인용 (의견 없음)
결정사항	-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이첩된 민원 관련 조사 진행 경과 및 처리 등으로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감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 또는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정보이며, -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이르는 내부의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제시되는 의견이 포함된 검토보고 내용이 공개된다면, 향후 감사나 조사업무 담당자들로서는 그 검토과정에서 민원처리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 공개에 따른 청구인의 알권리 보호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익을 비교형량 했을 때, 공개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공개 요청한 정보 중 해당 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기관과 주고받은 수발신 공문 일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부분인용)
비고	[관련근거]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명	2026년도 제3회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행정지원과
서면심의기간	2026. 2. 3. ~ 2. 4 / 2일간
회의방법	서면심의
심의위원	· 위 원 장: 김호진 행정부지사(직무대리) · 당연직위원: 김종수 안전행정실장 · 위촉직위원: 권오인 변호사, 송선아 변호사, 김병규교수
상정안건	정보공개 청구(권리행사 대비용 자료 청구)건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 검토결정
주요의견	○ 김호진 위원장: 기각 (의견 없음) ○ 김종수 위 원: 기각 (의견 없음) ○ 권오인 위 원: 기각 (의견 없음) ○ 송선아 위 원: 기각 (의견 없음) ○ 김병규 위 원: 기각 (의견 없음)
결정사항	-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 내용 및 조사 심의 과정과 결과 자료 등으로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결정 통지를 했으며,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인은 비공개 요청하였음 - 해당 정보 중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조사 개요 등 조사보고서 등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당초 정보공개 결정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 공개에 따른 청구인의 알권리 보호와 정보와 관련된 이의신청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우려를 비교형량 했을 때, 공개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기각)
비고	[관련근거]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명	2026년도 제4회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행정지원과
서면심의기간	2026. 2. 24. ~ 2. 26 / 3일간
회의방법	서면심의
심의위원	· 당연직위원: 김종수 안전행정실장 · 위촉직위원: 권오인 변호사, 송선아 변호사, 이상윤 교수
상정안건	정보공개 청구(출입기자 언론사명, 성명, 직위, 이메일 주소 등)건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 검토결정
주요의견	○ 김종수 위 원: 기각 (의견 없음) ○ 권오인 위 원: 기각 (의견 없음) ○ 송선아 위 원: 기각 (의견 없음) ○ 이상윤 위 원: 기각 (의견 없음)
결정사항	- 공공기관이 기자들에게 공공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언론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출입기자 성명, 이메일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로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문서 중 출입기자 언론사명, 성명, 이메일 등으로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결정 통지를 했으며 - 그밖에 출입기자 성명, 직위, 이메일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 공개에 따른 청구인의 알권리 보호와 비공개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보호하는 이익을 비교형량 했을 때, <u>공개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기각)</u>
비고	[관련근거]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명	2026년도 제5회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행정지원과
서면심의기간	2026. 3. 5. ~ 3. 12. / 6일간
회의방법	서면심의
심의위원	· 당연직위원: 황명석 행정부지사, 김종수 안전행정실장 · 위촉직위원: 권오인 변호사, 송선아 변호사, 이상윤 교수
상정안건	경주소방서 “다수 사망환자 2명 발생 동향보고(경주)” 문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 검토결정 심의
주요의견	○ 김종수 위 원: 기각 (의견 없음) ○ 권오인 위 원: 기각 (의견 없음) ○ 송선아 위 원: 기각 (의견 없음) ○ 이상윤 위 원: 기각 (의견 없음)
결정사항	-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다수 사망환자 발생에 따른 소방서 동향 보고 문서로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며, - 이미 사망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나,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므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 공개에 따른 청구인의 알권리 보호의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익을 비교형량 했을 때, 공개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공개 요청한 정보 중 다수 사망환자 발생 동향보고 공문 일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분인용)
비고	[관련근거]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명	2026년도 제6회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행정지원과
서면심의기간	2026. 3. 16. ~ 3. 18. / 3일간
회의방법	서면심의
심의위원	· 당연직위원: 황명석 행정부지사, 김종수 안전행정실장 · 위촉직위원: 권오인 변호사, 송선아 변호사, 이상윤 교수
상정안건	정보공개 청구(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 검토결정 심의
주요의견	○ 황명석 위원장: 기각 (세부 의견 없음) ○ 김종수 위 원: 기각 (세부 의견 없음) ○ 권오인 위 원: 기각 (세부 의견 없음) ○ 송선아 위 원: 기각 (세부 의견 없음) ○ 이상윤 위 원: 기각 (세부 의견 없음)
결정사항	-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 내용 및 조사 결과 등으로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결정 통지를 했으며,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인은 비공개 요청하였음 - 해당 정보 중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조사 개요 등 조사보고서 등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당초 정보공개 결정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 공개에 따른 청구인의 알권리 보호와 정보와 관련된 이의신청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우려를 비교형량 했을 때, 공개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기각)
비고	[관련근거]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명	2026년도 제7회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행정지원과
서면심의기간	2026. 4. 23. ~ 27. / 3일간
회의방법	서면심의
심의위원	· 당연직위원: 황명석 행정부지사, 김종수 안전행정실장 · 위촉직위원: 권오인 변호사, 송선아 변호사, 이상윤 교수
상정안건	1. 도 무형유산(가야금병창) 보유자 인정 심의 관련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 검토 결정 2. 도 무형유산(가야금병창) 보유자 인정 심의 관련 추가 청구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 검토 결정
주요의견	○ 황명석 위원장: 기각 (세부 의견 없음) ○ 김종수 위 원: 기각 (세부 의견 없음) ○ 권오인 위 원: 기각 (세부 의견 없음) ○ 송선아 위 원: 기각 (세부 의견 없음) ○ 이상윤 위 원: 기각 (세부 의견 없음)
결정사항	-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경상북도 무형유산위원회 회의록, 위원 명단 등으로 회의록 등은 이미 공개하였으며 - 그밖에 경상북도 무형유산 현장조사 보고서는 신청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현지 조사가 대면으로 시행되어 조사위원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이 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해당 조사가 유추되어 향후 공정한 평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 또한, 심의 관련 찬성·반대·기권 표결 수는 심의위원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이 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해당 심의자가 유추되어 향후 공정한 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 공개에 따른 청구인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 했을 때, 공개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기각)
비고	[관련근거]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명	2026년도 제8회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행정지원과
서면심의기간	2026. 5. 13. ~ 14. / 2일간
회의방법	서면심의
심의위원	· 당연직위원: 황명석 행정부지사, 김종수 안전행정실장 · 위촉직위원: 권오인 변호사, 송선아 변호사, 이상윤 교수
상정안건	상 정 안 건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실무직 노동조합 관련 문서 정보공개 청구 (현장실사 취소 관련) 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
주요의견	○ 황명석 위원장: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 김종수 위 원: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 권오인 위 원: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 송선아 위 원: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 이상윤 위 원: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결정사항	-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 중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실무직 노동조합 현장실사 계획 변경 사유 등은 이미 공개하였으며 - 그밖에 민원인 참여 관련 사실 판단 자료 등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 - 현장실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고려할 때, “민원인의 참여 가능성”은 당사자의 의견 확인 및 일정 통보 등에 근거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으며, 민원인에게 현장실사의 참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공개에 따른 청구인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조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 했을 때, 공개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이 타당함 - 다만, 「정보공개법」 제3조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되므로 노동조합과의 의사소통 자료 일체를 노동조합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노동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공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에 맞게 공개 가능한 부분은 분리해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부분인용)
비고	[관련근거]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명	2026년도 제8회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행정지원과
서면심의기간	2026. 5. 13. ~ 14. / 2일간
회의방법	서면심의
심의위원	· 당연직위원: 황명석 행정부지사, 김종수 안전행정실장 · 위촉직위원: 권오인 변호사, 송선아 변호사, 이상윤 교수
상정안건	도 감사관실 감사 민원(구미시 태양광발전허가 등 관련) 처리 관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
주요의견	○ 황명석 위원장: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 김종수 위 원: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 권오인 위 원: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 송선아 위 원: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 이상윤 위 원: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결정사항	-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구미시 태양광발전 관련 민원조사 내역 등으로 해당 정보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체로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적합한 자료로 판단됨 - 만약 이와 같이 감사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작성된 내용이 제한 없이 공개된다면, 향후 감사 업무 담당자들로서는 그 검토 과정에서 적극적인 감사를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향후 공정한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개에 따른 청구인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 했을 때, 공개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이 타당함 - 다만, 「정보공개법」 제3조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되므로 구미시 및 관계기관 사실조회 문서 일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에 맞게 공개 가능한 부분은 분리해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부분인용)
비고	[관련근거]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명	2026년도 제8회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행정지원과
서면심의기간	2026. 5. 13. ~ 14. / 2일간
회의방법	서면심의
심의위원	· 당연직위원: 황명석 행정부지사, 김종수 안전행정실장 · 위촉직위원: 권오인 변호사, 송선아 변호사, 이상윤 교수
상정안건	경상북도 발전허가 담당부서 정보공개 청구(구미시 도개면 일대 태양광발전소 관련 허가·공사계획 신고 등) 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
주요의견	○ 황명석 위원장: 기각 (세부 의견 없음) ○ 김종수 위 원: 기각 (세부 의견 없음) ○ 권오인 위 원: 기각 (세부 의견 없음) ○ 송선아 위 원: 기각 (세부 의견 없음) ○ 이상윤 위 원: 기각 (세부 의견 없음)
결정사항	- 본 청구의 해당 구미시 도개면 일대 태양광발전소는 1,500KW 이하의 발전사업으로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전기사업허가 등의 권한 및 도시계획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주체는 구미시임 -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 중 전기사업 허가 및 공사계획 신고 처리 기준 등은 이미 공개하였으며 그밖에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개별법 인허가 일반 기준 관련 자료 등은 담당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경상북도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부존재 정보로 판단됨 - 따라서 당초 결정통지서 내용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부 비공개 통지는 담당 부서의 행정적 착오로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결정 내용을 정정하여 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기각)
비고	[관련근거]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명	2026년도 제9회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행정지원과
서면심의기간	2026. 5. 22. ~ 26. / 2일간
회의방법	서면심의
심의위원	· 당연직위원: 황명석 행정부지사, 김종수 안전행정실장 · 위촉직위원: 권오인 변호사, 송선아 변호사, 이상윤 교수
상정안건	「문무대왕면 입천리 신설교량」 정보공개 신청 건 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
주요의견	○ 황명석 위원장: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 김종수 위 원: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 권오인 위 원: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 송선아 위 원: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 이상윤 위 원: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결정사항	-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 중 가드레일 및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도면, 교량 설계 기준 등은 이미 공개하였으며 보행 안전성 검토 자료 등은 경상북도에서 생산·접수하지 않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부존재 통지함 - 그밖에 공개 요청한 정보는 건설사업 관리 용역사 등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포함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 공개에 따른 청구인의 알권리 보호와 법인의 영업상 비밀 침해에 따른 불이익 등을 비교衡量 했을 때, 공개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이 타당함 - 다만, 입천교가 놓여촌도로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인도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 진행 중이라면 시공 후 그에 따른 안전사고 등 발생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공개 결정 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보행 인도 설치 검토 관련 자료 일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정보공개법」 제3조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므로 정보 공개 청구의 취지에 맞게 공개 가능한 부분은 분리해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부분인용)
비고	[관련근거]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명	2026년도 제10회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행정지원과
서면심의기간	2026. 6. 10. ~ 11. / 2일간
회의방법	서면심의
심의위원	· 당연직위원: 황명석 행정부지사, 김종수 안전행정실장 · 위촉직위원: 권오인 변호사, 송선아 변호사, 이상윤 교수
상정안건	울릉군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감독권 미행사 제보 등 민원 처리 과정에서 생산·접수·보유한 자료 정보공개 청구 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
주요의견	○ 황명석 위원장: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 김종수 위 원: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 권오인 위 원: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 송선아 위 원: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 이상윤 위 원: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결정사항	-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 중 민원 관련 울릉군에서 제출한 공문 및 메일 등은 이미 공개하였으며 전화·면담 등 사실확인 실시 결과 기록 자료 등은 경상북도에서 생산·접수하지 않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부존재 통지함 - 그밖에 이의신청인이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감사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이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체로서 분리 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만약 이와 같이 감사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작성된 내용이 제한 없이 공개된다면, 향후 감사 업무 담당자들로서는 그 검토 과정에서 적극적인 감사를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향후 공정한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개에 따른 청구인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이익 등을 비교衡量 했을 때, 공개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이 타당함 (가각)
비고	[관련근거]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명	2026년도 제11회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행정지원과
서면심의기간	2026. 6. 23. ~ 24. / 2일간
회의방법	서면심의
심의위원	· 당연직위원: 황명석 행정부지사, 김종수 안전행정실장 · 위촉직위원: 권오인 변호사, 송선아 변호사, 이상윤 교수
상정안건	정보공개 청구('22~'26 경북소상공인연합회 교부보조금 지원 관련) 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 이의신청 심의
주요의견	○ 황명석 위원장: 기각 (세부 의견 없음) ○ 김종수 위 원: 기각 (세부 의견 없음) ○ 권오인 위 원: 기각 (세부 의견 없음) ○ 송선아 위 원: 기각 (세부 의견 없음) ○ 이상윤 위 원: 기각 (세부 의견 없음)
결정사항	-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2022~2026년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된 보조금 관련 정보 등으로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사본 공개 결정 통지를 했으며, 「정보공개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인은 비공개 요청하였음 -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으며 「정보공개법」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이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자료의 정보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여 열람 공개한 만큼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정보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3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 공개에 따른 청구인의 알권리 보호와 정보와 관련된 이의신청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우려를 비교형량 했을 때, 공개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함 (기각)
비고	[관련근거]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명	2026년도 제11회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행정지원과
서면심의기간	2026. 6. 23. ~ 24. / 2일간
회의방법	서면심의
심의위원	· 당연직위원: 황명석 행정부지사, 김종수 안전행정실장 · 위촉직위원: 권오인 변호사, 송선아 변호사, 이상윤 교수
상정안건	행정안전부의 칠곡군 인평공원 조성사업 관련 감사 요청 공문 등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주요의견	○ 황명석 위원장: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 김종수 위 원: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 권오인 위 원: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 송선아 위 원: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 이상윤 위 원: 부분인용 (세부 의견 없음)
결정사항	-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칠곡군 북삼 인평공원 관련 감사 요청 공문 등으로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감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 또는 조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정보이므로, - 공개에 따른 청구인의 알권리 보호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익을 비교형량 했을 때, 공개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공개 요청한 정보 중 해당 민원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주고받은 수발신 공문 일체가 “감사·감독·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 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부분인용)
비고	[관련근거]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